#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2

발의연월일: 2020. 6. 5.

발 의 자:김병욱·김민기·홍영표

양향자 · 홍성국 · 이원욱

윤후덕 • 이상헌 • 김홍걸

윤영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Corporate Venture Capital)은 대기업이 벤처투자를 위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금융회사로 대기업 자본을 벤처기업·스타트업 육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CVC는 벤처기업·스타트업에 대해 장기위험자본 공급 기능을 수행하여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 모기업을 통한 자본, 경영관리, 기술지도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 생태계 전반에 발전적인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벤처기업·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일반지주회사의 주식소유가 금지되는 대상에서 CVC를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

이에 대해서는 CVC로 인한 금융의 불안정이 산업계로 전이되거나

대기업 집단의 사금고화 우려 등이 제기될 수 있는 바, CVC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한 내역, 자금대차관계, 특수관계인과 거래관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CVC에 대한 관 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의2제5항 및 제8항).

#### 법률 제 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5호 본문 중 "金融持株會社외의 持株會社"를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로, "一般持株會社"를 "일반지주회사"로, "金融業"을 "금융업"으로, "保險業"을 "보험업"으로, "國內會社의 株式을 所有하는"을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때 소유하는 주식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인 경우(이하 "기업주도벤처캐피탈"이라고 한다)는 제외한다.
- ⑧ 제2항제5호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기업주도벤처캐피탈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주도벤처캐피탈의 투자 현황, 자금대차관계, 특수관계인과 거래관계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했 개 아 第8條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 第8條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 한 등) ① (생 략) 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持株會社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5. 金融持株會社외의 持株會社 (이하 "一般持株會社"라 한 -----일반지주회사-----다)인 경우 金融業 또는 保 -----보 險業을 영위하는 國內會社의 험업-----국내회사의 株式을 所有하는 행위. <후 주식을 소유하는----. 이 때 소유하는 주식이 「중소기업 단 신설> 다만, 일반지주회 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 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 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 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일반 사업금융업자인 경우(이하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 "기업주도벤처캐피탈"이라고 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 한다)는 제외한다.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 다.

③ ~ ⑦ (생 략) <u><신 설></u> \_\_\_\_\_\_

- ③ ~ ⑦ (현행과 같음)
- ⑧ 제2항제5호에 따라 일반지 주회사가 기업주도벤처캐피탈 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주도벤처캐피탈의 투자 현황, 자금대차관계, 특수관계 인과 거래관계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